

# 제27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

## ① 이사회 개최 개요

- 기 간 : 2016.7.13(수) 17:00~19:00
- 장 소 : (재)안산문화재단 1층 회의실
- 참여인원
  - ▶ 총14명중 이사 8명 참여
  - ▶ 이사 참여자: 제종길, 강창일, 김용권, 황두진, 이재용, 박신화, 문 현, 김 민
- 회의진행
  - ▶ 사회자 : (재)안산문화재단 행정지원부장
  - ▶ 회의주제 :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 ▶ 심의안건 제안설명 : (재)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장
  - ▶ 안건심의 및 의결 : 참석이사 전원
  - ▶ 폐회 : 참석이사 전원

## ② 이사회 개최 내용

- 심의안건 : 6건
  - 의안 제59호: 2016년도 제3회 자체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의안 제60호: 단원미술관 임대시설물 운영(안) 심의 건
  - 의안 제61호: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
  - 의안 제62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
  - 의안 제63호: 업무직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
  - 의안 제64호: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

## ③ 안건 심의 결과

- 의안 제59호 2016년도 제3회 자체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자체 추가수입(보조금 및 자체수입)에 따른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

가. 수입재원

(단위:원)

합 계	안산시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 수입	추가수입(자체)	비 고
142,030,700	0	0	100,000,000	42,030,700	

나. 지출예산 편성

(단위:원)

부 서	편성금액	주요내용
계	201,900,000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사용
행정지원부	4,400,000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비용
기획홍보부	1,500,000	업무자료 제본
지역문화부	100,000,000	2016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단원사업부	58,000,000	단원미술관 카페테리아 조성 공사, 사무실 이전 설치
축제사무국	38,000,000	거리극 홍보 방송 제작비(MBC파워매거진), 2016 여르미오 페스티벌

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원)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2016.7.	59,869,300원	단원미술관 카페테리아 설치공사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기본시설 구축 인테리어	58,000천원
		2016 여르미오 페스티벌 사업비 증액	여르미오 페스티벌	1,869천원

라. 예산현황

1. 수입예산

(단위:원)

구 분	본예산		제2회 추경(6월)		제3회 추경(금회)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1,226,019	100%	13,169,118	100%	13,311,148	100%
자체사업수익	996,956	8.9%	966,956	7.3%	966,956	7.3%
대행사업수익	1,070,000	9.5%	1,320,000	10.0%	1,320,000	9.9%
기타영업수익	743,400	6.6%	743,400	5.6%	743,400	5.6%
영업외수익	7,665,663	68.3%	9,141,107	69.4%	9,283,137	69.7%
잉여금	750,000	6.7%	997,655	7.6%	997,655	7.6%
증 감			1,477,344		142,030	

## 2. 지출예산

(단위:원)

구 분	본예산		제2회 추경(금회)		제3회 추경(금회)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1,226,019	100%	13,169,118	100%	13,311,148	100%
행정운영경비	4,272,648	38.1%	4,318,748	32.8%	4,323,148	32.5%
전당시설관리	2,061,674	18.4%	2,253,674	17.1%	2,253,674	16.9%
정책개발및홍보	276,250	2.5%	322,650	2.5%	324,150	2.4%
문화예술진흥	646,200	5.8%	983,710	7.5%	1,083,710	8.1%
공연사업	1,718,150	15.3%	2,256,150	17.1%	2,256,150	16.9%
단원미술관운영	732,180	6.5%	797,180	6.1%	855,180	6.4%
무대운영	235,378	2.1%	419,378	3.2%	419,378	3.2%
축제및문화광장운영	1,283,539	11.4%	1,642,539	12.5%	1,680,539	12.6%
예비비			175,089	1.3%	115,219	0.9%
증 감			1,477,344		142,030	

### ○ 의안 제60호 단원미술관 임대시설물 운영(안) 심의 건 : 수정가결

(이사장, 대표이사에게 위임)

#### ▶ 주요내용

- 단원미술관 현 사무공간을 <카페테리아>로 변화시켜 공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및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자 선정 및 내부 인테리어를 콘셉트에 맞게 설계하여 서비스 예술기관으로서의 내실 있는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수정내용: 운영방식(직영,위탁)에 있어 이사장, 대표이사에게 위임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개최 시 보고

### ○ 의안 제61호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 : 수정가결

#### ▶ 주요내용

- 안산시 종합감사시(2015.11월)시 규정 제정 권고 사항으로, 재단의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등을 정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재단 업무의 투명성을 확립 하고자 규정으로 제정코자 함.

- 수정내용

1. 감사규정 제정(안) --> 내부감사규정 제정(안)

2. 제24조(외부감사)①재단이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총괄한다.

-->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수감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됨

○ 의안 제62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직원의 구분을 정의하고 정원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조항 변경 (안 제5조)

- 직원의 총 정원은 변동없이 일반직과 업무직의 정원을 변경함 (별표 2)

- 수정내용: 대표이사 부속실 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

-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됨

○ 의안 제63호 업무직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 : 수정가결

▶ 주요내용

가. 업무직 용어의 정의를 변경함 (안 제3조)

: 기존의 업무직에 공연장 하우스 운영자, 부속실 근무자를 추가

나. 업무직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표시 (안 제27조)

: 종전 정년이 업무별로 동일하지만 업무별로 표시함

다. 업무직의 정원을 변경함 (별표 1)

: 공연기획부에 하우스 운영 업무 추가

: 행정지원부에 부속실 운영 업무 추가

- 수정내용

1. 업무직 용어 정의 중 부속실 근무자 --> 삭제

2. 업무직 정원 중 행정지원부 부속실 운영 업무 --> 삭제

-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됨

○ 의안 제64호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의 출장시 식비의 3분의 1 지급 (안 제5조)
- 여비의 지급을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함 (안 제6조)
  - : 실비정산을 정액정산으로 일부 변경(항공운임은 실비정산)
- 근무지내 출장중 근거리, 단순업무, 재단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출장시 출장여비를 안산시 버스요금으로 정액지급함 (안 제7조)
-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함 (안 별표1)
- 별표2의 국외여비등급을 4단계로 변경함 (안 별표2)
  
- 수정내용
  1. 대표이사 항공운임 1등석 정액 --> 2등석 정액
  2. 근무지내 출장중 근거리, 단순업무, 재단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출장 시 출장여비를 안산시 버스요금으로 정액지급함 (안 제7조)
    - >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됨

## 제 27 차 이사회 심의(토의)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6.6.13.(수) 17:00 ~ 19:00</li> <li>○ 장 소 : (재)안산문화재단 1층 회의실</li> <li>○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 제종길, 강창일, 김용권, 황두진, 이재용, 박신화, 문현, 김민</li> <li>- 감사 : 조동근, 김흥배</li> </ul> </li> </ul>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부터 안산문화재단 제27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li> <li>○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신 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강창일 대표님이 오셔서 안산문화재단이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올해도 거리극축제를 비롯한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거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안산문화재단이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신다면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는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성원보고 드립니다. 재적이사 열네분 중 여덟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제2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li> </ul>
제종길 이사장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는 접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접수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접수안건은 심의안건 6건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안 제59호 2016년도 제3차 자체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li> <li>2. 의안 제60호 단원미술관 임대시설물 운영안 심의 건</li> <li>3. 의안 제61호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li> <li>4. 의안 제62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li> <li>5. 의안 제63호 업무직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li> <li>6. 의안 제64호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li> </ol> </li> <li>○ 또한 기타 보고의 건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는 제26차 이사회 의결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전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li> <li>○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간사	○ 제26차 이사회를 2016년 6월9일부터 13일까지 서면이사회로 실시하였으며, 총 열네분의 이사님 중 열세분의 이사님이 참여하셔서 의안 제57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과 의안 제58호 “임직원 행동강령 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전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이사님들께서는 지난 제26차 이사회 결과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없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그러면 안건 제59호 ‘2016년도 제3회 자체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종길 이사장	○ 기획홍보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안건제안 설명
기획홍보부장	○ 기획홍보부장입니다. ○ 2016년도 제3회 자체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6년 자체 추가수입 보조금 및 자체수입이 발생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재원 보조금 수입 100,000,000원과 추가수입 42,030,700원으로 142,030,700원이 발생하여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부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비용 4,400,000원, 기획홍보부는 업무자료 제본으로 1,500,000원, 지역문화부는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 생사업 안산시보조금을 받은 100,000,000원을 단원사업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단원미술관 카페테리아 조성 공사 및 사무실 이전 설치 등으로 58,000,000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협찬금 유치를 해서 홍보비로 사용한 18,000,000원과 2016년 8월 13일 계획인 여르미오 페스티벌 사업에 매년 1억 정도였지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예산 60,000,000원과 추가예산 20,000,000원 합산하여 80,000,000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종길 이사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재원은 142,030,700원인데 추가편성금액이 201,900,000원으로 수입재원이 부족하여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충당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도 의 내 용
기획홍보부장	○ 회계규정 제1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긴급한 사항과 재난사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000 이사	○ 예비비는 이월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해두어야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부장	○ 별도의 항목을 넣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와 일반사업비로 분리하면 명확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예비비는 불가피한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쓰기 힘들지 않겠나 싶네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홍보부장	○ 전체 예산이 130억이고 통상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나머지 예비비는 아끼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하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그러면 의안제59호‘2016년도 제3회 자체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사 일동	○ 없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의안제59호‘2016년도 제3회 자체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그러면 안건 제60호“단원미술관 임대시설물 운영안 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행정지원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부장	□ 안건제안 설명 ○ 의안 제60호 단원미술관 임대시설물 운영안 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 안산문화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재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사업을 확정하며, 수탁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원미술관의 현재 사무공간을 카페테리아로 변화시켜 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또한 운영자 선정 및 내부 인테리어를 콘셉트에 맞게 설계하여 서비스 예술기관으로서의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합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행정지원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입니다.</li> <li>○ 임대시설물의 위치는 현재 단원미술관 사무실로 면적은 108.55평방미터입니다. 갤러리카페 개념의 공간 연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컨셉트는 브런치메뉴, 미술작품, 친환경 제품 전시 및 판매 등으로 미술 및 여성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시설 구축과 운영자 선정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16년 9월 초에 운영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천오백만원입니다.</li> <li>○ 자세한 사항은 18쪽과 19쪽에 있는 단원미술관 카페테리어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이상으로 의안 제60호 단원미술관 임대시설물 운영안 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000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카페테리아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기도 하겠지만 단원미술관 접근성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를 준다고 해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의 특징을 만드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li> </ul>
행정지원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접근성이 부족하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것만으로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격과 발전방향으로, 또 어떤 특성으로 운영하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운영자와 처음부터 협의하에 운영컨셉트를 구성하고 갤러리카페 개념을 도입해서 여성들이 늘 찾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람객, 등산객, 쇼핑객도 이용가능한 문화공간으로 기능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li> </ul>
강창일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월 넘게 단원미술관 기획전시, 대관전시를 지켜보면서 문턱이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권터그라스전때에도 평균 1일 250명, 최근 서예문인화전 입상자가 많아 하루에 6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근본적인 교통장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시 계시다 가시는 경우가 많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더 느껴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했고, 접근성 부분은 콘텐츠 좋은 전시를 하고 미술관의 본모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확보하진 않았지만 운영자를 적극 도와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li> </ul>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000 이사	○ 운영자 선정이 중요한데요.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운영자 선정 자격이 나 제안이 중요한 거 같은데 수익을 위해서 하기엔 공간이 적합하지 않고 예술적 이해와 깊이가 있는 분이 운영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강창일 이사	○ 직영도 할 수 있나요? ○ 제 경험을 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나 서울예술의전당, 성남은 직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했으나 서비스의 일종이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듯합니다.
제종길 이사장	○ 직영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거 같으면서도 확신은 안 서는 곳이지만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요?
000 감사	○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기부체납식으로 카페를 직접 준비 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미 카페건물을 준비해 놓고 운영자 선 정을 한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수익도 안되는 부분을 재단에서 추진한 자체가 문제소지가 있 을수도 있다. 처음엔 평생학습관이나 라이브러리 이음처럼 운영하다가 이후 운영자에게 임대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이사	○ 일단 입찰을 통해 진행해보고 유찰이 되면 직영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 을까요?
제종길 이사장	○ 직영보다 민간이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민간이 맡아서 하며 잘 된 경우가 없었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준, 경영능력이 있는 분을 알아봤는데 많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직영도 검토해보는 의 견을 내면 어떨겠습니까?
000 이사	○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게 목표라면 직영을 해서 그 장소를 더 활성화 시켜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이사님들께서 직영으로 가자고 해도 좋을 거 같고 한번 더 검토해서 서면의결을 하는것도 좋을거 같고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에 위임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한다던가, 민간위탁으로 해보고 안됐을 경우 직영으로 해보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창일 이사	○ 미술관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술 관은 미술관답게 오는 관객들께 서비스를 맞춰 드리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부장이 2개월에 거쳐서 유사기관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눈높이 서비스를 하는 게 맞고 그 장소가 명소가 되니 미팅도 많아지고 잘되었습니다. 단원미술관이 다 갖춰졌으니 카페테리아를 운 영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이사장한테 위임해주시면 추후에 보고하는걸로 결정하는게 어떨까요?</li> <li>○ “단원미술관 카페테리아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대표이사,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개최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li> </ul>
이사 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li> </ul>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 “단원미술관 카페테리아 운영(안) 심의 건”은 수정한 부분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li> </ul> <p data-bbox="411 719 592 757">[의사봉 3타]</p>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제61호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li> </ul> <p data-bbox="411 819 592 857">[의사봉 3타]</p>
기획홍보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홍보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안건제안 설명</li> <li>○ 안건 제61호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li> <li>○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종합감사시(2015.11월)시 규정 제정 권고 사항으로, 재단의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재단 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금번 규정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총칙과 감사의 의무와 권한, 감사계획과 시행, 보고 및 기타, 보칙, 본문 총 5장 25조로 감사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li> <li>○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li> </ul>
000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지 제가 감사이고 이 부분이 감사가 할 사항이지만 내부직원이 말한다고 하면 그 구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안산시 종합감사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감사규정을 제정하고자 했을 때 지금 현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li> </ul>
기획홍보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시 감사님, 외부감사님 두분이 계시지만 직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 감사가 되셨고 외부감사님은 회계감사를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부분입니다. 이번 감사규정 제정은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li> </ul>
강창일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가 큰 문화재단은 감사관을 독립으로 두지만 저희 규모가 작으니 이 규정을 제정해서 만들라고 한 부분입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과장 어디서 요구한 건가요?</li> </ul>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000 감사 제종길 이사장 기획홍보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li> <li>○ 감사부서는 어디입니까?</li> <li>○ 기획홍보부가 해당이 되고 부장이 감사관이 되어 담당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li> </ul>
제종길 이사장  기획홍보부장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조 재단이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총괄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요.</li> <li>○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수감업무를 총괄한다 라고 하는게 어떨까요?</li> <li>○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수감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라고 하겠습니까.</li> <li>○ 의안 제61호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li> </ul>
이사 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없습니다.</li> <li>○ 그러면 ‘감사규정 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li> </ul> <p>[의사봉 3타]</p>
제종길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면 네 번째 안건 제62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li> </ul> <p>[의사봉 3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홍보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기획홍보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안건제안 설명</li> <li>○ 안건 제62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li> <li>○ 재단의 특정 업무분야에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을 두고 있으며, 금번 공연장 하우스 운영 및 부속실 근무자를 업무직 정원으로 추가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총 정원은 변동없이 정규직 중 일반직의 정원을 업무직으로 변경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li> <li>○ 직원의 총 정원은 변동없이 일반직의 인원을 55명에서 53명으로 하고 업무직을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li> <li>○ 지역문화부의 6급 1명과 공연기획부의 5급 1명을 감원하여 행정지원부 업무직 1명, 공연기획부 업무직 1명을 전환해서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li> </ul>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제종길 이사장 기획홍보부장	<p>○ 행정지원부 업무직은 대표이사실의 부속실에, 공연기획부 업무직은 공연장 하우스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p>○ 하우스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입니까?</p> <p>○ 공연장 전체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정규직 4급 과장이 했던 업무입니다.</p>
제종길 이사장 기획홍보부장	<p>○ 기존 4급 과장이 했던 매니저를 업무직이 해도 적합한가요.</p> <p>○ 업무특성상 단순 반복업무라고 보고 외부민원 응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있는 부분이라 제대로 된 직원을 채용하면 문제 없을거라 봅니다.</p>
000 이사 강창일 이사	<p>○ 대표이사 부속실은 단순업무 아닌가요? 업무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p> <p>○ 단순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서포터를 해주어야 하는 자리이고, 안정된 사람을 채용해서 연속성 있게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했습니다.</p>
제종길 이사장	<p>○ 하우스 매니저는 그 분야를 잘 모르겠고, 비서가 능력있고 안정되어야 된다는건 맞는데 정년이 보장된다면 60세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일반적으로 돌리게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채용을 해서 나이가 들면 비서실은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순환하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p>
000 이사 기획홍보부장	<p>○ 제가 보기에 인건비도 많이 차지하는데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이 크지 않나요?</p> <p>○ 현재 기간제와 업무직 인건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년보장이 된다는 부분의 차이입니다.</p>
강창일 이사 행정지원부장	<p>○ 행정지원부장이 말씀드려주세요</p> <p>○ 그동안 하우스 매니저 업무에서는 업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비서 부분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해 만60세까지 가도 될지에 따라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대표가 바뀔때마다, 2년이 지날때마다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연속성부터 전문성까지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역사를 축적해 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p>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000 감사	○ 정규직, 업무직의 채용방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부장	○ 채용방식은 공개채용으로 똑같습니다.
000 감사	○ 채용할 때 정규직, 업무직을 구분해서 채용을 할텐데 정규직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행정지원부장	○ 업무직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종길 이사장	○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하는 직을 말하는 거고, 정규직하고는 차별은 있지만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서만 정년까지 한다는거는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도 계속 바뀌실텐데 대표이사 성향에 맞는 분을 고용하는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비서를 일반업무를 주고 다른분을 채용하겠다 하고 일반직 중에 관찰은 직원을 비서로 하겠다고 하면 관찰지만 업무직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은 명분상에 실현가능성이 없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부장	○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 주시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000 감사	○ 하우스 운영하는 부매니저도 재 채용해야 되는건가요?
행정지원부장	○ 연말까지는 계약기간이므로 근무하게 됩니다.
000 이사	○ 저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일반직에서 교환근무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한이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뽑자고 하신거 같습니다. 일반직, 업무직의 차이가 어떤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부장	○ 업무직, 일반직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임금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000 이사	○ 재단 직원은 일반직, 업무직으로 구분되며, 업무직은 매표, 상담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특정업무라함은 그 조직에서 다른 업무를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부속실과 하우스매니저 중 하우스매니저는 그 업무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속실 직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업무직 보다는 일반직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종길 이사장	○ 인건비 차이가 거의 안나다면 부속실 인원은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의결을 하는게 어떨까요.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p>제종길 이사장</p> <p>이사 일동</p> <p>기획홍보부장</p>	<p>○ 의안 제62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일반 직 1명, 업무직 1명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p> <p>○ 네</p> <p>○ 그러면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 안건 제63호 ‘업무직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p> <p>○ 기획홍보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안건제안 설명</p> <p>○ 안건 제63호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p> <p>○ 직제 및 정원규정에 업무직의 정원을 변경함에 따라 업무직에 대한 업무범위와 부서별 업무직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직의 정년이 개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정원에 공연기획부 하우스 운영자를 추가로 넣고 부속실 근무자는 일반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p> <p>○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p>제종길 이사장</p> <p>이사 일동</p> <p>제종길 이사장</p>	<p>○ 안건 제62호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사님들 이해되시죠?</p> <p>○ 의안 제63호 ‘업무직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제62호와 연계하여 행정지원부 부속실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p> <p>○ 네 없습니다.</p> <p>○ 그러면 ‘업무직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p>제종길 이사장</p> <p>기획홍보부장</p>	<p>○ 안건 제64호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p> <p>○ 기획홍보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안건제안 설명</p> <p>○ 안건 제64호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p> <p>○ 여비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중 근거리 출장과 단순업무 출장, 단원미술관과 문화광장 등 재단의 다른 사업장에 출장시 출장여비를 안산시내 버스요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규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p> <p>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의 출장시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안산시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정산을 정액정산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과 근무지내 출장중 근거리, 단순업무, 재단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출장시 출장여비를 안산시 버스요금으로 정액 지급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사협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1년 출장비가 3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50명 기준으로 하면 1인당 540,000원 정도이고 월65,000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여비는 아닌거로 생각되는데 업무량이 증가되어 여비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서 출장 여비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출장을 정작 가야될 직원의 출장비에 부족분이 생기게 되니 가까운 거리를 가는 출장은 실비로 지급하고 관외출장자들에게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연간 500만원 정도의 절감 결과가 예상됩니다.</p> <p>나머지 내용은 안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p>000 이사</p> <p>기획홍보부장</p>	<p>○ 제7의2조 중 “출장이나 출장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를 ”출장을 말한다“로 한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p> <p>○ “출장이나 출장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출장을 말한다“ 로만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p> <p>유인물 46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이 있습니다.</p>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000 이사 제종길 이사장	○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님, 여비 제6조에서 국내여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는 실비로 1등석 정액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출장비는 부족하지만 시내버스를 정액요금을 지급한다는거는 현실성이 없고, 공무로 가는데 실제로 버스를 안타고 자차를 이용하는데 버스요금을 준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맞는거 같으니 차라리 만원씩이라도 지급하고 범위를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가능하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께 위임 해드리는데 좋을 거 같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의안 제64호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님께 위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 네 없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그러면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된 모든 내용을 대표이사께 위임하고 수정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종길 이사장	○ 다음은 기타 보고의 건으로 대표이사께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강창일 이사	○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잘 마무리 되었는데요, 행사구성은 총 13개국 50작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관람객은 78만 9천명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제로 다양한 수상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미술관의 경우 1종 미술관 등록도 됐으며 단원작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셨고, 단원미술제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6쪽 지역특화프로그램 중에 문화가 있는날 거점프로그램이 6개역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며, 실적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융복합 프로젝트 단원화무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공연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뜨거운 연휴의 막바지인 8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코바나 라틴음악, 킹스톤 루디스카, 서영은, 하하& 스컬이 참가합니다.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강창일 이사	○ 카페테리아 내용은 알고 계시니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시설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안산시 마이스산업의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 일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국가공공기금으로 14년도에 8억4천, 15년도에 8억8천, 올해는 더 늘어나겠지만 18억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000 이사	○ 네 대표이사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여르미오 페스티벌 8월 13일인데 야외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창일 이사 000 이사	○ 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설치비용을 적게 들이고 곳곳에 시간대별로 다르게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전체적으로 저녁 프로그램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000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가 서민의 도시이고 노동자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찍 끝나는 부분은 염두해두고 미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단원미술제의 경우 저녁 9시까지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종길 이사장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지만 그중에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만은 없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평가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사님들의 평가도 없었고, 지역의 예총도 그렇고 냉정하게 한번 자체평가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거리극 축제가 된다면 내부적인 평가도 받아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비중을 뒤야 될듯합니다. 사전사후에 의견수렴도 중요할거 같습니다. 평가가 축제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